

일본 정부는 한일회담문서를 즉각 공개하여 한일간 훼손된 신뢰를 회복하라.

2014년 7월 25일 동경고등재판소는 한일회담문서 공개소송에 대한 판결을 내렸다. 위 판결은 일본 외무성이 항소한 불개시부분에 대해 전면 일본 외무성의 주장을 인정하고, 원고들이 부대 항소를 한 3개 부분을 제외한 모든 주장을 물리치는 부당한 것이다.

우리는 위 판결에 대해 항의하는 바이나 더 이상 상고를 하지 않기로 하였다.

그 이유는 외무성이 548건의 문서를 완전 공개하지 않아 있다가 그 후 1심 판결의 승소에 의해 어쩔 수 없이 순차적으로 공개를 하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상황이 제대로 일본에 보도되지 않고 있다. 아울러 이번 동경고등재판소에서 원고들이 항소를 통해 역전 승소한 부분은 전혀 보도가 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상고를 하여 재판에 이겨 공개를 하여도 보도되지 않는다면 무슨 의미가 있는가?

그러므로 우리들은 더 이상 판결이 아니라 일본의 양식과 민주주의 힘으로 관련 문서의 전면 공개를 촉구한다.

동경고등재판소는 2014년 7월 25일 판결을 통하여 비록 한일협정이 체결된 지 이미 50년 가까이 경과하였지만 한일양국의 관계는 개선이 요망되고 있고, 북한과의 국교정상화교섭은 이제부터 시작되는 상황인데, 이런 상황에서 불개시 문서가 공개되면, 북한측에 유리하게 이용되고, 문화재에 대해서는 한국과의 사이에도 인도문제가 재연되고, 독도에 대한 정보는 한국과 관계에서 불필요한 알력을 생기게 하고, 당시 일본고관의 솔직한 발언들이 한국국민들을 자극할 수 있다는 이유를 들어 일본 정부의 부당한 주장을 받아 들었다.

즉 남북분단을 이용하여 어부지리를 얻었던 것을 어떻게든 유지하고, 청구권문제가 1965년 당시 제대로 처리되지 않은 진실이 들어나는 것을 두려워하고, 식민지배에 대한 반성이 없는 일본 정부 고관들의 망언을 감추는 것이 과연 일본국민들에게 유리하다는 동경고등재판소의 이러한 판단은 선량한 일본 국민의 양식에도 반하고 민주주의의 발전을 발목 잡는 것이다.

우리는 이러한 판단은 침략전쟁의 전범들의 이익을 지키고자 하는 것으로 침략전쟁을 반성하고 항구평화주의를 존중하는 일본 헌법에도 반하는 것이라 주장한다.

따라서 이번 원고들의 상고 단념을 계기로 거꾸로 한일회담문서를 전면 공개되어 한일간 신뢰관계를 회복되길 당부한다.

2014. 8. 8.

한일회담문서공개소송 한국측 원고단 일동